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1788호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0호, 2011. 6. 2.) 제13조에 따라 2026년 12월 5일 실시 예정인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26. 10. 26.(월) ~ 11.9.(월) 10:00 ~ 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열람장소 :

장 소	소 재 지	비고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사무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59-18, 미도상가 1층 118호	

3. 열람내용 : 상계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안내사항

가. 선거권에 대한 사항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선거인명부에 명의변경, 기재사항 누락, 오기 등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참고 서식)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1)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나)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류 각 1부

나)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제출서류 :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법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마.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이후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 선거일 투표시간 내까지 권리변동 증빙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열람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제출양식(이의신청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등)은 공공지원 사무실에서 확인 및 수령 가능하며, 노원구청 홈페이지(노원소개→알림마당→고시공고)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정보몽땅 홈페이지 주소 : https://cleanup.seoul.go.kr/cafe/mainIndx.do?cafeUrl=sgmido

5. 문의 : 공공지원 사무실 (☏ 02-930-7661)